

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

(김진표의원 대표발의, 제23546호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 기술 연구·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(이하 “과학기술사관학교”라 함)를 설치하고, 국방과학기술의 심화교육 및 고도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.
-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, 대학원 석사·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(안 제3조).
-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(안 제4조).
-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일반학 및 군사학

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, 대학원 석사·박사 학위과정의 교과
는 국방과학기술 분야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, 국방부장관과
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(안 제5조).

- 학사 또는 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12주
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되, 그 시기는
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
하여야 함(안 제6조).
-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사관학교 교육과정을 한국과학기술원과 공
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
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-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
군의 소위로 임용하고,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
사람은 각 군의 중위로 임용함(안 제9조).
-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국방과학연
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4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
(안 제10조).
-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
대하여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
II. 검토의견

1. 기초군사훈련 대상으로서 석사학위과정 학생 제외

- 안 제7조에 따르면, 학사학위과정 또는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 수업연한 중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규정¹⁾하고 있음. 이는 비전투 특기인 과학기술전문장교 임용을 예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에게 기초적인 전투능력 숙지 및 체력함양을 위한 훈련을 받도록 하는 취지임.
- 제정안은 학사학위과정 뿐만 아니라 석사학위과정 학생도 기초군사훈련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. 그런데 ① 석사학위과정은 학문적 수업 및 연구를 위한 학위과정²⁾이라는 점, ② 현역 장교·준사관·부사관, 군무원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을 졸업하더라도 장교 임용을 예정하지 않는 점³⁾, ③ 주로 방학기간 시행될 기초군사훈련은 학생의 휴식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필요최소한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고려하면, 석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군사훈련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.

1) 안 제7조(기초군사훈련)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위과정 전체 수업연한 중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조정,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군사훈련 시기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.

2) 안 제6조(교육과정) ④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,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3) 안 제10조(졸업자의 임용)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, 해군 및 공군(이하 “각군”이라 한다)의 소위로 임용한다.
②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 졸업자로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중위로 임용한다.

- 따라서, 안 제7조에서 “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” 부분을 삭제하여, 기초군사훈련은 학사학위과정을 이수 중인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만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제시함.

<수 정 의 견>

제 정 안	수 정 의 견
제7조(기초군사훈련)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<u>학사학위과정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을</u>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위과정 전체 수업연한 중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조정,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제7조(기초군사훈련)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<u>학사학위과정을</u>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위과정 전체 수업연한 중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조정,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. 관계기관 의견

가. 기획재정부

- 기획재정부는 학교를 신규로 설치하고 경우 재정소요가 크고, 이미 운영 중인 국방첨단기술 전문인력 양성제도 및 교육과정과 기능·역할이 중복되는 등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, 국방부는 기술사관 양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은 한국과학기술원(KAIST)에서 담당할 예정이므로, 학교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,

교수의 인건비 등 추가 재정소요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.

- 이에, 기획재정부는 국방부가 설명하는 운영 방식을 조문상 명확히 하기 위하여, 국방부장관이 기존 교육기관을 과학기술사관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(안 제1조 및 제2조), 운영에 필요한 교수 등 추가 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(안 제12조 및 제13조) 수정안을 제시하였고,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였음.
- 따라서, 이를 반영하여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함.

<수 정 의 견>

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<u>설치하여</u>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·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<u>지정·운영하여</u>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·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<u>설치</u>) ①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<u>국방부장관 소속으로</u>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(이하 “과학기술사관학교”라 한다)를 <u>둔다</u> .	제2조(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<u>지정·운영</u>) ①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<u>국방부장관은</u>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(이하 “과학기술사관학교”라 한다)를 <u>지정·운영할 수 있다</u> .
②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에 대한 심화교육과 고도의 첨단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	②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에 대한 심화교육과 고도의 첨단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<u>지정된</u>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을 <u>운영할</u> 수 있다.

제12조(교장 등의 임명)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을 둔다.

② 교장은 장성급(將星級)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
③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(이하 “교수 등”이라 한다)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(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둔다.

제13조(교수등의 자격 및 임명) ① 공무원 중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·박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(職種) 및 자격에 관하여는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를 준용한다.

②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일반 학과정과 대학원 석사·박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,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.

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④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일반 학과정 및 대학원 석사·박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,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1조의4를 준용하며, 보수·연수·신분보장·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「교육공무원법」 및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을 각각 준용한다.

제12조(교장, 교수 등의 임명)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, 교수 등 교원과 그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 삭 제 >

나.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- 안 제9조제1항은 과학기술사관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(KAIST)과 일반학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, 같은 조 제2항은 공동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과학기술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⁴⁾, 국방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정할 시 단순히 한국과학기술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, 국방부는 이를 수용함.
- 따라서, 이를 반영하여 국방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함.

<수 정 의 견>

제 정 안	수 정 의 견
제9조(교육과정 공동 운영) ① (생 략)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<u>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과학기술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</u>	제9조(교육과정 공동 운영) ① (제정안과 같음)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</u>

4) 안 제9조(교육과정 공동 운영)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교육과정(군사학과정은 제외한다)을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(이하 “한국과학기술원”이라 한다)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학위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과학기술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- 그 밖에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,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한 석 현)